

CMP v14.9 유지보수 계약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이하 갑이라 칭함)와 BBR Center(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내담자 자료관리 프로그램 (이하 CMP라 칭함)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함)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목적>

- (1) 을이 갑에게 공급한 CMP 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정비 및 지원에 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최초 2022 년 3 월 1 일부터 2023 년 2 월 28 일 까지(12 개월)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일 30 일 전까지 갑 또는 을 어느 한 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고가 없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 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유지보수 비용> 을이 갑에게 공급한 CMP 유지보수 비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급계약 시 책정된 년 유지보수 비용 금일백삼십이만원 (₩1,320,000: 부가세포함)으로 하며, 월 유지보수비용은 금일십일만원(₩110,000: 부가세포함)으로 정한다.
- (2) 대금 지급은 을이 월간 유지보수비용을 매월 말일자로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익월 현금으로 이를 지급한다.

제 4 조 <지원방법 및 범위>

- (1) 을이 유지보수하는 소프트웨어는 을이 갑에게 납품한 CMP 14.9 / CMP Client 및 CMP Database 에 한정한다.
- (2) 갑에게 운영상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일시 상호 협의하여 원격 및 유선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3)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될 경우 을은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
- (4) 을은 갑의 보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원격으로 처리하며 원격으로 처리 불가시 일정을 잡아 방문 처리한다.
- (5) 세부사항은 붙임의 'CMP 유지보수 과업내역서'를 따른다.
- (6) 을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월별 유지보수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 5 조 <예외사항 및 특별 유지보수비용>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을에게 책임이 없으며 갑의 요청으로 보수할 경우 갑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 (1) 을이 제공하지 않은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 (2) 갑이 을에 대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3) 무리한 환경조건 하에서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고장
- (4)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 (5) 화재, 수해, 지진, 낙뢰 등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인 경우
- (6) 갑의 요청으로 인하여 신규 기능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 발생의 경우

제 6 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의 기간을 두어 협력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을 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_ 갑의 시정 요구를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 _ 을이 정상적인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경우
- _ 을이 파산 신고를 받거나 해산, 청산, 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
- _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 _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처분 및 가압류 포함) 등 기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_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갑의 계약위반에 대한 을의 시정요구를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1) (2) 항의 해지 효력은 을 또는 갑이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4)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7 조 <지체상금> 을은 본 계약을 이행치 못할 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4조에 의거한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1.25/1000)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전쟁, 폭동, 홍수, 지진, 정부의 조치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의 지체에 대하여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석 및 재판 관할>

- (1)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 및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의 수정 및 첨삭을 결정한다.
-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견이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0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1 조 <신의 성실 및 협조>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을 수행해야 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 12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쌍방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 계약을 상호 자유로운 의지로 완전 합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02월 23일

(갑)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사업자번호 : 102-82-0166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홍성태 (인)

(을) 비비알센터

사업자번호 : 217-03-7875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94 11-1202

BBR Center

대표 박병노 (인)



CMP 유지보수 과업 내역서

1. 과업개요

- 가. 과업명 :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상담센터 내담자 자료관리 프로그램(CMP 14.9) 유지보수
-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2. 목 표

- 가.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인 상담자용 내담자 관리 프로그램, 내담자용 자료 관리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및 장애발생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하도록 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학생 및 상담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3. 유지보수 범위

가. 시스템

- 1) CMP(Client data Management Program) v14.9
- 2) CMP for Clients v2.0
- 3) DB서버 : Microsoft MSSQL EXPRESS 2012

나. 설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 1) BBRCenter 서버 80포트에서 ClickOnce로 설치 및 자동 업데이트
- 2) 학생상담센터 상담자들 PC에서 설치 및 업그레이드

다. 프로그램 관리

- 1) 3일/월 이하 커스트마이징
- 2) BBRCenter 자체 업그레이드 기능 제공

라. 신규장비 도입 및 장비교체로 인한 시스템 이전 시 DB서버 이전 업무 지원

마. 프로그램 수정

- 1) CMP 운영 시 발생하는 에러사항 수정
- 2) 기능 추가와 기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 (3D/M 이하)
- 3) 업무 프로세스 변경(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 4) 기능보완에 따른 개발비용은 개발분량과 개발내용에 따라서 협의 후 결정

바. 자료 백업 업무

- 1) 자료백업은 CMP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을 통해 학생상담센터 자세관리

사. 교육지원

- 1) 관리자 교육 필요시 유선 및 원격으로 관리교육 실시

4. 과업수행 지침

가. 개인민감정보 관리 규약 기준하여 보안 기준을 따름

5. 과업진행 방법

- 가. CMP 원본 설치 파일을 BBRCenter 서버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
- 나. 장애발생시 원격으로 신속하게 지원
- 다. 원격으로 장애처리 불가시 일정 조정 후 방문조치 처리

6. 유지보수 계약기간

- 가. 현재 유상으로 유지보수 체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 나.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1년 단위로 유지보수 재계약 처리함
- 다. 유지보수 2차 계약기간 2022. 3. 1 ~ 2023. 2. 28.

7. 유지보수 비용

- 가. CMP 공급시 계약한 유지보수 비용 및 유지보수 계약서 기준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비비알센터(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상담센터 내담자 등록 및 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학생상담센터의 내담자 개인정보 프로그램의 설치 및 교육
2. CMP 프로그램 입력 정보의 보관 및 유지보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0년 03월 01일 ~ 2022년 02월 28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02. 23.

위탁자

주 소 :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길 31

기관(회사)명 :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대표자 성명 : 홍 성 태



수탁자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94
11-1202

기관(회사)명 : 비비알센터

대표자 성명 : 방 병 노

